

# 2019년도 제1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자 : 2019. 7. 17.(수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전용준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임진모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0건(안건번호 제2019-72390호~72489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 : 영화 등의 불법복제물로서,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그외 저작권제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, 시정권고가 타당함.
- B 위원 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 중에는 2019년 개봉된 최신 영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예컨대 영화 알라딘(2019), 영화 퍼펙트 타겟(2019), 영화 명탐정 피카츄(2019),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(2019), 영화 악질경찰(2019), 영화 더 보이(2019), 영화 캡틴 마블(2019), 영화 샨잠!(2019) 등입니다. 이러한 불법 복제 전송물들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- C 위원 : 72390호부터 72489호까지 100건의 경우 <알라딘> <퍼펙트 타겟> 등 최신영화에 대한 불법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

2019년 제11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7. 17.

분과위원장 전용준

위원 박성호

위원 임진모